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교육위원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 근거 마련 >

■ 정성국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088호)

2025. 9.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상열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 근거 마련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정성국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 2025. 8. 11.
3. 회 부 일 : 2025. 8. 1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폭력 사안은 조사과정 동안 가해자·피해자 분리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등 중대한 교권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가해자·피해자 분리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 전에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학급교체 등을 부과할 수 있으나, 교권침해 사안의 경우 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될 때까지 분리조치만 명시하고 있음.

때문에, 교권침해 사안 발생 시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이(통상 21일 이상 소요) 나기까지 오히려 피해교원이 특별휴가, 병가, 연가, 휴직 등을 활용하여 가해학생을 피해 다니고 있는 상황임.

이에, 상해·폭행, 성범죄 등 중대한 교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학교의 장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 결정 전에도 봉사활동, 출석정지, 특별교육 등 긴급조치를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1항부터 제13항까지 신설).

Ⅲ. 검토의견

1.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 근거 마련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상해·폭행,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에 따른 조치 적용 전에, 학교의 장이 학교에서의 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등의 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대한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가해자·피해자 분리조치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1항부터 제13항까지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5조(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 ① ~ ⑩ (생략) <u><신설></u>	제25조(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 ① ~ ⑩ (현행과 같음) <u>⑪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이 「형법」 제2편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 피해교원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u>

	는 때에는 우선 제2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각각 또는 동시에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신 설>	⑫ 제11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제2항제4호의 조치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 결정 시까지로 정할 수 있다.
<신 설>	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1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침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침해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⑪ (생 략)	⑭ (현행 제11항과 같음)

나. 검토의견

- 현행법은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보호 조치(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와 분리조치(가해자와 피해교원 분리)를 하도록 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 등에 대하여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

분리조치 기간은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교육활동보호 관

런 상세내용이 기술된 「2025 교육활동보호 매뉴얼」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분리방법 결정 시점으로부터 ‘최대 7일 범위 내(초일 산입, 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에서 실시하도록 권장되고 있음.¹⁾

한편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 등에 대한 조치는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린 후,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결정한 조치를 하도록 교육장에게 요청하고, 교육장이 조치를 적용하는 절차를 거침.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기간은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2025 교육활동보호 매뉴얼」은 사안 접수 후 21일 이내에 조속히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으며,²⁾ 교육장의 조치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적용하도록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조치 조항]

「교원지위법」
제20조(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등) ① <u>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지도·감독기관(국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공립·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한다. 이하 “관할청”이라 한다)과 그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하 “피해교원”이라 한다)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u> 1. 심리상담 및 조언 / 2.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3.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 ② <u>관할청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교원의 반대 의사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가해자와 피해교원을 분리(이하 “분리조치”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리조치된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에는 별도의 교육방법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u> 제25조(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 ① <u>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u>

1)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25 교육활동보호 매뉴얼」, 2025.2., p.41

2)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25 교육활동보호 매뉴얼」, 2025.2., p.27

「교원지위법」	
②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제1항 및 제28조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이하 “침해학생”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학교에서의 봉사 / 2. 사회봉사 / 3.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4. 출석정지 / 5. 학급교체 / 6. 전학 / 7. 퇴학처분
③~⑤	(생략)
⑥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기 전에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절한 절차 를 거쳐야 한다.
⑦	교육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조치의 이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⑧	교육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침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침해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를 가중하여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⑨	침해학생이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 할 수 있다.
⑩	제2항에 따라 교육장이 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⑪	그 밖에 조치별 적용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러한 현행법 및 매뉴얼에 따르면,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결정(대략 21일 이상)한 후 교육장이 적용(14일 이내)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침해학생과 피해교원이 분리되는 기간(7일 이내)을 넘어서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고,

분리조치가 종료된 후부터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적용되기 전까지, 피해교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한 때와 유사한 환경에서 침해학생과 마주하는 상황에 놓일 우려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상해·폭행,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에 따른 조치가 적용되기 전에도, 침해학생에 대해 학교에서의 봉사, 특별교육, 출

석정지, 학급교체 등의 조치(이하 “긴급조치”)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 중대한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가해자·피해자 분리조치를 보완하고자 함.

참고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함)」은 학교폭력사건이 발생한 경우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하는 것 외에도 학교장이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가해학생에 대해 학교에서의 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등의 조치(이하 “긴급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에 따라 상해·폭행,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해 긴급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피해교원은 본인의 회복을 위해서가 아닌 학생과 분리되기 위한 목적으로 연가, 병가 등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가능한 경우 해당 교원이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보임.

□ 다만 법률 개정과 관련하여, 「학교폭력예방법」의 긴급조치 및 현행법의 교육활동 침해학생 조치 절차 등을 고려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개정안은 「학교폭력예방법」에서 가해학생에게 적용하는 긴급조치와 유사한 수준으로 침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³⁾ 「학교폭력예방법」은 긴급조치 중 출석정지, 학급교체가 적

용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에서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도록(제21조제2항)하는 반면, 개정안은 이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출석 정지, 학급교체는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결정 기준 점수가 11점~16점인 경우 적용되는⁴⁾ 비교적 강한 조치에 해당되어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에서도 해당 조치를 하려는 경우 의견을 듣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임.

[긴급조치 관련 조항 비교]

「교원지위법」 개정안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제25조(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이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 피해교원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우선 제2항제1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⑤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제1호, 제3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를 각각 또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제17조제1항)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3) (안 제25조제11항) 학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 우선 조치하고, 조치의 종류를 결정하는 위원회에 보고하여 추인

(안 제25조제12항) 출석정지 조치는 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조치 결정 시까지 적용 가능

(안 제25조제13항) 침해학생이 조치를 거부·회피하는 경우 징계 가능

4)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결정 기준

구분		점수	조치 내용
조치없음		0~4	-
교내선도	1호	5~7	학교에서의 봉사
외부기관 연계선도	2호	8~10	사회 봉사
	3호	-	교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교육 환경 변화	교내	4호	출석 정지
		5호	학급 교체
	교외	6호	진학
		7호	퇴학

자료: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별표]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별 적용 기준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별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에서 출석 정지, 학급 교체는 1점(최저)~20점(최고) 중 10점~15점에 해당함

「교원지위법」 개정안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각각 또는 동시에 할 수 있다. 이 경우 <u>지역교권보호위원회</u>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현행법 제25조제2항) 1. 학교에서의 봉사 / 2. 사회봉사 / 3.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4. 출석정지 / 5. 학급교체 / 6. 전학 / 7. 퇴학처분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 3. 학교에서의 봉사 / 4. 사회봉사 / 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6. 출석정지 / 7. 학급교체 / 8. 전학 / 9. 퇴학처분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1조(가해학생에 대한 우선 출석정지 등) ① 법 제17조제5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라 학교의 장이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2. 학교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3.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4.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5.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하는 경우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으려 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⑫ 제11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제2항제4호의 조치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은 <u>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 결정 시까지</u>로 정할 수 있다.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부과하는 제1항제6호 조치의 기간은 <u>심의위원회 조치결정시까지</u>로 정할 수 있다.
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1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u>침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침해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u>	⑩ 학교의 장이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u>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u>

또한 현행법에서도 위원회가 조치를 결정하여 교육장에게 적용을 요청하기 전에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제25조제6항),

개정안에 따라 침해학생에게 출석정지, 학급교체가 적용되는 경우

에도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아울러 현행법은 침해학생이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을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제25조제9항), 개정안에 따라 긴급하게 학교에서의 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조치를 받은 경우에도 출석일수 산입 등이 적용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 등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개정안 관련 교육부 등 의견]

○ 교육부: 일부수정

- 현행법상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학교의 조치는 쉬는시간 등의 동선 분리계획을 세워 가해학생과 피해교원을 분리하거나, 피해교원에게 특별휴가 등을 사용하도록 하는 데에 그치고 있음.
- 동 개정안을 통해 학교장이 침해학생에 대해 긴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심리적 불안감 해소, 2차 피해 방지 등 피해교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조치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현행 피해교원 보호조치

- 교육활동 침해행위 가해자와 피해교원 분리 단,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 별도 교육방법 마련
· 운영(「교원지위법」제20조제2항)
- 피해교원에게 5일 범위의 특별휴가 부여(「교원지위법」제23조,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제8조)
- 다만, 학교장이 학교봉사, 특별교육 이수를 조치를 한 경우에는 현행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한 경우와 동일하게 침해학생의 결석을 출석일수에 산입하도록 하고, 학교장의 긴급한 조치라 하더라도, 비교적 강한 조치인 출석정지, 학급교체의 경우에는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진술 기회를 주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음.

○ 경기도교육청: 신중검토

- 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학급교체 조치는 학생의 학습권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으

며, 학급교체 목적의 의도적인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이견없음

- 학생으로부터 상해, 폭언, 성폭력을 당하고도 가해학생과 분리되지 않아 불안과 공포심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으며 교실로 돌아갈 수 없는 경우가 많고,
- 특별휴가는 주말 제외 5일, 학생 긴급분리는 주말 포함 7일 권장으로 되어 해당 기간 종료 후 가해 학생과 피해 교사가 다시 한 공간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교사 개인의 연가, 병가를 사용하며 교사가 학교를 떠나있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다수의 일반 학생들에게 교사가 바뀌는 혼란과 불안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긴급조치를 규정한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함.

문 의 처

02)6788-5189